

GATT 무역관련 지적소유권(TRIPS) 협정 동향

본회 국제부

1. 서론

지적소유권(IPRS)의 보호문제가 최종적으로 UR Agenda로 상정되어 위조상품의 교역을 포함한 현행 초안 Agreement가 채택되었다.

미국과 EC는 비효과적이고 또는 부적절한 보호는 상품위조 및 불공정 경쟁과 같은 무역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에 관심을 두고 있다. 주요 문제는 합법적인 IPPS의 보호에 대한 적절한 지적소유권의 보호수준을 달성하는데 있으며 등 Agreement은 과도한 보호(다국적 기업의 독점권 확대, 신기술 유입의 저해, 의약 및 기타 특허상품의 가격 인상)와 보호미흡(연구개발되어 보호받은 제품에 지출한 최초의 비용을 공제시키는데 충분한 시간을 가지지 못한 제조업체의 투자의욕을 저해)을 방지도록 규제하고 있다.

동 Agreement은 직접적으로 이전의 지적소유권 협약들의 원칙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준한 관리 및 해석에 따르고 있다.

첫째, 세계 지적소유권기구(WIPO)은 GATT 포럼에서 다루어졌을 때 지적소유권 협약에 관한 TRIPS의 관리(administration)부분에서 제외되었다.

둘째, TRIPS 관련 문제에 새로운 차원(dimension)의 요소가 추가 되었는데, 왜냐하면

이전의 지적소유권 협약의 배경 뿐만아니라 동Agreement 자체에 대해서도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TRIPS Agreement은 동 협정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줄 수 있는 GATT의 기타 Article과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연관 및 보완관계가 있는 것이다.

2. IPRS의 적용, 적용범위, 활용에 관한 기준

1) 저작권(Copyright and Related Rights)

저작권 관련 동 Agreement, Article 9에는 베른협약(Berne Convention)의 Article 1~21에 포함된 기본 Article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Article을 준수할 9는 저작권 보호를 아 이디어, 절차, 운영방법 또는 수학적 개념이 아닌 표현(expressions)에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동규정은 베른협약의 적용범위를 TRIPS Agreement 서명국에까지 확대시키고 있다.

주목할만한 사항은 베른협약에 따라 문학작품으로서 보호받게 될 Article 10의 컴퓨터 프로그램의 포함이다. 또한, 데이터 또는 기타 자료의 취합도 읽을 수 있는 기계(machine readable), 혹은 기타 형태로 보호 받게 될 것이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창작일로부터 보호

받게되며 저작자의 死後 50년까지 보호받게 된다.

동프로그램 1명의 저자 또는 많은 사람이 공동저자인 경우, 베른협약 Article 7bis가 적용되며 저작자의 死後 50년까지 보호 받게된다. 사진작품(Photographic Work), 또는 응용예술 작품을 제외한 작품의 보호기간이 서명국에 의해 저작권의 수명이 아닌 기준으로 계산될 경우 최소 보호기관은 인정된 저작권이 공표된 연도말부터 50년이다.

2) 상표권(Trademarks)

동Agreement, Article 15(1)은 보호받을 수 있는 상표권에 대한 전반적인 정의(definition)을 나열하고 있으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제품 또는 서비스를 분간할 수 있는 어떠한 신호(Sign) 또는 신호의 복합(combination of signs)은 상표권으로서 인정받게 되며 또한 본래의 해당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분할 수는 없으나 사용할 수 있는 잘 알려진 상표와 컬러의 복합도 포함되고 있다.

상표의 사용조건과는 별도로 Article 15(2)에 따라, 서명국은 만일 파리협약(Paris Convention)의 규정을 위배하지 않았을 경우 다른 이유를 들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Article 15(3), (4), (5)는 상표권의 등록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데 다시말해서, (1) 서명국은 실제 상표권의 사용이 등록신청시의 조건이 아닐지라도 용도에 따라 등록할 수 있음, (2) 상표권이 적용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은 상표권 등록의 장애요인이 되지 말아야 함, (3) 서명국들은 등록전 또는 등록후 즉시 각 상표권을 공표해야 하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청원(petitions)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서명국은 상표권의 등록을 반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서명국이 사용 용도를 등록토록 요구할 경우, 본등록은 사용포기(non-use)최소 3년후 취소가 가능하다. 동케이스의 경우, Article 19에 따라 상표권자에게 왜 상표권 사용에 대한 장애요인을 토대로 한 케이스가 아닌지에 대

해 타당한 이유를 제기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서명국은 일반적으로 상표권의 강제적인 라이선스를 요구할 수 없다.

<보호형태 및 조건>

일단 상표권의 등록이 발효되면 상표권자는 동의없이 제3자가 교역상 혼동을 줄 수 있는 등록된 상표권의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 혹은 서비스의 신호를 사용치 못하도록 하는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 상표권의 최초 등록과 등록갱신은 7년간 유효하며 7년이 경과된 후 무한정 갱신된다.

3) 지리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

Article 22의 Geographical Indications은 스위스의 시계, 스코트랜드의 위스키, 프랑스의 보르도와인, 해리스의 트위스와 같은 명성있는 특정제품에 대한 품질 보호를 갈망하는 소위 “Old World” 국가들의 주장으로 대부분 포함되었다.

<보호형태 및 기간>

동Agreement의 Article 22(2)는 서명국들이 관련 당사자가 정확한 원산지를 일반인에게 오도시키는 문제제품의 표시 또는 제안을 사용치 못하도록 하는 법적인 수단을 제공토록 규정하고 있다.

Article 22(2)는 파리협약 Article 10조에 규정된 기준을 초과하며 동협약 Article 10 bis에 포함된 불공정 경쟁에 관한 규정을 강화시켰다. 와인 및 스프리트(火酒)에 대한 지역표시는 Article 23에서 추가적인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Article 24는 GATT UR협상 개시전 용도상 특정표시를 보호하기 위해 Article 23이 허용한 특별보호에 대한 여러 예외 사항과 와인 및 스프리트 관련 기타 획득한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4) 산업디자인(Industrial Designs)

Article 25, 26은 산업디자인을 다루고 있다. Article 25(1)은 서명국들이 새로 또는 처음에 창안된 산업디자인을 독자적으로 보호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디자인이 새롭거나 또

는 최초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2가지중 1가지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면 되며 2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킬 필요는 없다.

산업디자인에 대한 보호의무는 “필연적으로 기술적 또는 기능적인 고려 대상이 된 디자인”에 대해서는 예외로서 허용된다. 동Option은 위조상품이 범람한 자동차 예비 부품의 공급을 커버기 위해 포함되었다. 이러한 동규정의 임의성으로 서명국들은 독자적으로 예비부품과 기타 기계류가 산업디자인 보호와 일치 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서명국들은 어느정도 재량권을 갖고 있다.

<보호형태 및 기간>

Article 26(1)은 보호받은 산업디자인 소유자는 제3자가 상업목적으로 그의 허락없이 디자인의 제조, 판매, 수입, 복제하였을 경우 이와 같은 행동을 방지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Article 26(3)에 따르면 허용된 보호기간은 최소 10년이다.

5) 특허(Patents)

정치적 및 경제적인 이유로 TRIPS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동Agreement, Part II, Section 5에서 다루고 있는 특허문제이다. 특허분야 내에는 특허권(patentability), 배제(exclusions), 의무적 라이선스(compulsory licences), 특허과정(patent processes), 보호기간(term of protection) 등 기타 주요 관심분야가 있다.

① 특허권(Patentability)

Article 27(1)은 본질적으로 특허는 모든 기술분야의 제품 또는 제품 과정이건간에 새롭고 창조적이며 산업응용이 가능할 경우 독창성으로서 유용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② 배제(Exclusion)

Article 27(1)은 상업분야 내에서 인간, 동물, 식물생명, 건강 혹은 심각한 환경문제를 회피하는데 예방이 필요할 경우 발명은 특허권에서 제외될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유전공학(genetic engineering)과 생물공학적연구(biotechnological research)을 통해 생성된 생

물(living organisms)에 관한 특허관련 복잡한 윤리적, 법적문제를 다룰 때 어려운점이 야기된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의약제품은 많은 개도국들이 자국의 의약제품에 대한 특허를 보호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도 불구 동예외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다.

③ 의무적 라이선스(Compulsory Licensing)

동Agreement은 의무적인 라이선스에 대한 제한사항(limitations)을 포함하고 있다. 1개국의 법이 특허권자의 인가없이 정부 또는 정부가 인가한 제3자의 사용을 포함하여 특허권의 사용을 허용할 경우, 비지니스 안전의 도모(투자활성화)와 불법적인 남용을 예방키 위해 여러 요구 조건들이 준수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구 조건중 가장 중요한것은 다음과 같다.

- 특허 사용전 제안된 특허사용자가 합리적인 상업조건을 토대로 특허 보유자로부터 인가를 받기위해 노력하였고 이와 같은 인가 획득노력이 합당한 기간내에 성취되지 않았을 경우 특허사용은 허용됨(동조건은 국가의 비상사태 또는 기타 극한 상황시 유보됨)
- 사용범위 및 기간은 제한된다.
- 특허사용을 인가한 국가 시장의 공급을 위해서는 특허사용은 허용된다.
- 특허사용에 대한 인가결정은 사법심사를 받게된다.

④ 특허 과정(Patent Processes)

동Agreement, Article 28(1), (6)에 따른 특허 공정권에 대한 보호를 위해 중요하고도 혁신적인 사항이 Article 34에 포함되어 있는데, 동조항은 공정특허로 생산된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피고가 보유했을 경우 원고의 입증부담은 피고에게 전가된다.

이전에는, 특허과정상 지적소유권을 소유한 사람은 특허 침해자가 소유한 동일제품이 특허공정을 이용, 제조되었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입증해야 했다. Article 34가 발효되면, 상기인은 특허 침해자가 보유한 제품이 공정특허로 획득되었다는 사실을 단지 입증하면 된

다.

⑤ 특허 보호기간(The term of protection)

특허 보호기간은 최소 특허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동TRIPS Agreement, Article 2는 파리 협약의 주요내용을 적용하고 있다.

파리협약은 우선권을 두고 있는데 1개국에 출원한 특허 출원자는 기타 국내 특허보호를 출원하는 데는 12개월이 소요되며, 이후 특허 출원은 특허출원 첫째날에 접수된 것으로서 다루어질 것이다.

6) IC 설계 디자인(Topographies)

① 보호기준(The Basis of Protection)

IC Topographies의 보호는 '89. 5. 26일 서명, 발효된 IC 지적소유권 조약(Intellectual Property in Respect of IC : IPIC Treaty)의 주요규정과 일치시켜 규정하고 있다.

동TRIPS Agreement, Section 6의 근간으로서 IPIC조약의 활용은 흥미로운 일인데, 왜냐하면 IPIC 조약에 가입한 국가는 소수이며 주요 생산국들은 동보호가 이미 입법화된 국가들간에 이미 체계화된 보호수준 보다 미흡하다는 점을 근거로 동조약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로, IPIC의 모델로서 활용은 비록 IPIC에 허용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정이 불가피 하지만 동분야의 개발에 한계가 있는 개도국에는 상당히 유익할 것이다.

Article 37(2)에 IPIC 조약의 개선된 내용이 내포되어 있는데, 필요한 내용을 변경한(mutatis mutandis)특허에 관해 상기에서 명기한 세이프 가드를 컴퓨터 배치 내용으로 디자인의 강제적 구매(Compulsory purchase)에 적용시키고 있다.

그러나, Article 37은 특허 침해자가 무지하거나 IC의 획득 또는 통합시 그가 보호받고 있는 배치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함에 있어서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경우, 특정 당사자는 특허권 소유자에 대한 로열티 지불 의무가 면제되는 “선의의 특허 침해자(innocent

infringer)” 규정을 도입함으로서 상기보호에 대한 예외사항을 규정해 놓고 있다.

② 보호형태 및 기간

Article 36에 따르면, 특허권자의 인가없이 상업목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IC 배치 디자인의 차용(importing), 판매 또는 유통시키는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서 간주된다.

Article 38에 따른 배치 디자인 보호기간은 특허 출원 신청일 또는 최초의 제품 개발일로부터 10년이다. 서명국은 배치디자인 발명후 15년까지 보호할 수 있는데 IPIC조약 Article 8에 규정된 보호를 강화한 것이다.

7) 미공개 정보의 보호

Article 39는 불성실한 방법으로 획득한 영업비밀을 보호함으로서 불공정 경쟁을 억제할 목적으로 동Agreement에 포함되었는데 파리 협약(1967) Article 10bis에 상세하고도 주요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Article 39 Paragraph 1과 2에 의하면 서명국은 하기의 경우 미공개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자연인 또는 법인의 관할권내에 있는 합법적인 정보가 1) 비밀, 2) 비밀이기 때문에 상업가치가 있으며, 3) 비밀유지를 위해 정보를 통제하는 자연인의 합리적인 조치로 제한을 받는 한 정당한 상관행과는 정반대되는 방법으로 당사자의 승인없이 타인이 획득하였을 경우이다.

상기사항은 개별 당사자간의 행위에 관련되어 있으나, 마케팅 승인을 얻기위해 정부기관에 제공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문제가 야기가 되고 있다. 상업목적으로 제공된 미공개 데이터가 데이터의 창작에 상당한 노력을 요하는 경우 공표로부터 보호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케이스는 남용의 문제(예, 불필요한 데이터의 포함)와 또한 데이터의 일반 대중에로의 전달 등의 문제를 야기시킨다. 서명국이 취한 조치와 공공의 보호근거에 따라 동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할수 있는 자유재량권의 문제가 될것이다.

8) 계약 인가상의 반 경쟁적 관행의 통제.

계약 인가상의 반경쟁적 관행의 통제는 개도국에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수출국의 자유로운 독점적 권리의 기술유입을 심히 차단시킬 수 있다. 반대로, 독점적 권리의 존재는 최소 제한된 기간동안 투자의 수익율에 필수적이다.

Article 8에 포함된 전반적인 세이프가드 조치와는 별도로 Article 40(2)는 또한 서명국들이 특정 관행을 자국의 국내법상 반경쟁적인 것으로서 취급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관행의 경우 또는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동조항은 의무적인 특허 라이선스의 가능성, 물론 Article 31에 포함된 세이프가드 규정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동 Agreement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같은 신흥공업국들(NICS)은 특정 세이프가드에 해당되는 독점관행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되며 이와 같은 관행을 협의코자 정식 협의체가 현재 가동중이다.

3. 시행(Enforcement)

IPRS의 시행문제는 동Agreement에서 매우 중요하며 IPRS를 GATT 포럼으로 상정시킨 주요 이유 중 하나였다. 제재조치와 분쟁해결을 위해 효과적인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서 국가들간에 상호 손상을 주는 일방적 조치의 리스크는 실체적으로 감소되었다.

동Agreement는 시행절차에 관한 상세한 요구조건을 규정해 놓고 있다. 동규정은 지적소유권의 소유자가 지적소유권의 침해에 대해 적절하고도 효과적인 수입규제 조치를 취함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에 목표를 두고 있다. 상표위조 또는 저작권의 해적제품에 대해 동Agreement은 또한 이러한 제품의 수입을 방지키 위한 국경관세 조치(customs border measures)의 가능성과 상업목적으로 고의적인 상표위조 또는 저작권 해적에 대한 형사조치가 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규제하고 있다.

4. 과도적 시기(Transitional Measures)

동Agreement, Part VI, Article 65(1)은 발효 후 1년동안 동협정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입법을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Article 65(2)에 따라 개도국들은 동협정을 준수하는데 추가적으로 4년간의 유예기간을 갖게된다. 4년간의 추가 유예기간은 또한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에서 자유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고 지적소유권 제도의 구조적 개편과 지적소유권법의 준비 및 시행상 특별히 어려움에 직면한 국가에도 적용될 것이다.

최빈국(LDCS)은 필요한 행정조정을 위해 10년간의 유예기간을 허용 받게된다. 신흥공업국에 대한 특정 양허조치는 없으나 그 대신에 일반표제의 개도국의 범주에서는 포함되어 1개제품이 동Agreement 적용시 개도국내에서 보호를 받지못하는 특허제품의 경우에는 총5년에서 10년까지 유예가 연장 될 수 있는 혜택을 누릴수 있다.

Article 70은 현행 주요 보호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IPR 보호에 대한 다양한 사항들을 다루는 장황하고 상세한 최초의 조항이다.

5. 결 론

동Agreement은 국제적인 개별법의 협약을 초국가적인 협약으로 체계화시키는 과감하고도 혁신적인 시도이다. 이러한 접근에는 본래 개념상의 문제가 있는 반면, 세계무역에서 IPRS의 중요성의 고조는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데 필수적임을 묘사해 주고 있다.

이러한 점은 해외의 특허침해로부터 IPRS을 보호하기 위해 특히 미국의 판정을 고려한 것이다. 동Agreement은 비차별적인 지적소유권 보호, 최소한의 보호기준, IPR 소유자를 위한 효과적인 보호를 규정해 놓고 있다. 주목해야 할 중요한 점은 문학작품 50년, 특허권 20년, 산업디자인 10년의 보호기간을 두고있다는 점인데, 선진국의 현행 보호수준 만큼이나

보호를 하게되는 것이다.

이러한 보호는 동Agreement 당사국들의 상대적인 협상력의 강화와 지적소유권의 무허가 사용을(free rides) 종식시키기 위해 고차원의 보호를 고수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집요함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한국이 GATT, TRIPS Agreement에 서명할 경우 EIAK 회원사들은 현재의 제품수입(imported goods)보다도 IPR의 강화된 보호수준을 주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EIAK 회원사는 1)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은 저작권보호, 2) 상표권 보호, 3) 산업디자인, 4) 의약제품과 생물공학 제품의 보호 등에 속하는 제품 또는 기타 아이디어의 표현을 합법적으로 복제하기 전 장기간 기다려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자사제품을 소개함에 있어 한국의 산업은 일반적으로 원산지를 불확실한 방법으로 제품을 묘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것이다.

IPRS의 확장되고 더욱 명확히 정의된 의무는 한국의 개발과정에서 중요한 노하우와 기술의 획득을 위해 선진국에 지불해야 되는 로얄티를 고려해 볼 때 중요한 결과를 지니고

있다. 게다가, 개도국에서 현재까지 가능하였던 수단인 의무적 라이선스를 통해 지적소유권을 획득할 수 있는 국가의 권리가 축소되었다. 이와 같은 의무적 라이선스 권리의 축소는 우선적으로 그와 같은 기술을 생산하기 위해 R&D에 필요한 재원(resources)을 투자할 수 있는 서구 다국적 기업들의 독점권을 고양시키는 영향을 주고 있다. 긍정적인 면으로는, 지적소유권의 최혜국대우(MFN)의 도입은 늘어나고 있는 IPRS이 국제적인 영역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또한 한국의 전자제품이 더욱 혁신화 및 첨단화 됨에 따라 한국은 제품혁신에 대한 강력한 보호가 초국가적인 차원에서 실행 가능한 형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환영할 것이다. 개도국은 지적소유권의 준비와 법 시행상 특별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기술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과도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인식되어 특허보호 분야에서는 10년이 유예기간이다. 따라서 동Agreement에서 발생될 수 있는 악영향은 중장기적으로 미칠것이다.

